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76호 2016. 11. 17(목)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26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2
- 사천시 훈령 제327호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 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6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2)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26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1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의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 중 건축과 건축복합민원담당·도로과 도로계획담당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3)

[별표 1]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제3조 관련)

[산업건설국 소관]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건 축 과	건축복합 민원담당	1. 개발행위허가, 신고, 협의 및 사후관리
		2. 행위제한 인허가 협의
		3.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업무(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환급, 체납관리)
		4.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환급, 체납관리)
		5.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업무 전반
		6. 본청·읍면동청사 신축·증축·대수선에 관한 사항
		7. 시·읍면동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검토 및 착공, 감독, 준공
		8. 시설직이 없는 부서의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한 건축분야 시행사업 사전 기술검토 및 자문 협조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4)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도 로 과	도로계획 담당	1. 도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사천 제2대교 건설 추진
		3. 군도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4.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건설사업 지원
		5. 홍사일반산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6.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 및 감독
		8.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계획 및 추진
		9. 건설기술진흥법에 관한 사항
		10.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12. 도로 등급·노선 지정(조정) 및 준용도로 지정
		13. 관리청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관리(군도)
		14. 일반국도, 지방도 건설사업 관련 수탁보상
		15. 도로기설 사업 및 보상관련 소송 업무
		16. 군도 편입토지 취득·관리 및 용도폐지
		17. 도로 교통량 조사
		18. 과내 서무, 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 업무
		19. 과내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0. 시설직이 없는 부서의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한 토목분야 시행사업 사전 기술검토 및 자문 협조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5)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27호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1월 1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관광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발 및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
2. 시장이 모집절차를 통해 해설사로 선발하고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신규 해설사 양성교육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3개월 이상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선발한 사람과 해설사 직무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시장은 해설사의 위촉여부를 매년 1월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 모집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시 소재 관광지 견학, 우수지역 문화탐방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7)

**제6조(해설사의 직무)** ①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

- ②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 ③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 ④ 시의 축제 및 행사 시 관광안내와 홍보활동 수행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시장은 해설사에 대하여 문화관광자원의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8조(해설사 준수사항)**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패용한 후, 용모가 단정한 상태로 활동하여야 한다.
2. 해설사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시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당일 활동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8)

② 시의 지원 요청(관광홍보·안내, 문화해설, 박람회 참가 등)을 받은 해설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 운영계획과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6일 이상으로 하되, 계절별 관광객 수요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령 및 해촉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을 만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설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④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다.

1.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9)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제공
3. 해설사 직무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제공
5.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회의 등에 해설사가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배치 심사를 위하여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10)

3.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여부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11)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한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위촉된 해설사는 이 규정에 따라 선발·위촉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476호(12)

[별 표]

##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관련)

연번	위 반 내 용	조치사항
1	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경고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6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자격 박탈(해촉)
7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
8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
9	보수교육 과정 후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
10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11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에서 배치심사 제외된 사람	”
12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지에서 유료 해설활동을 한 경우	”
13	사천시 해설사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비 고)

1. ‘자격 박탈’의 경우 향후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수강을 금지함.
2. ‘자격 박탈’된 사람은 해설사증 등을 반납하여야 함.